COMWEL WELCOME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

2022. 9. 1.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사용자”·“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 근로자·사용자·임금을 말합니다.
2. “가입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합니다)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3. “공단”이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합니다.
4. “급여”란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6.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영”, “규칙”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성실의무) ① 공단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와 가입자는 이 계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단이 이 계약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장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설정

제4조(적용범위) ① 중소퇴직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제5조(계약방법) ① 사용자는 이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대표 동의서(별첨 1호)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명단(별첨 2호)

3.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별첨 3호)

③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가입대상 및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가입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공단이 통지한 때 계약이

체결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이 계약을 적용합니다.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6조(가입자)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자는 제5조에 따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서 근무하는 법 제4조제1항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입자 명단을 공단에 제출한 경우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인의 임원 중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경우 제8조 제1항의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본다)

제7조(가입자 통지)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휴대전화번호, 예상연간임금총액, 입사일, 가입일, 중간정산일(중간정산 지급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등 가입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하 “가입자 정보”라 합니다)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가입기간)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사용자가 제5조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이 해지된 날의 다음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 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합니다)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④ 제9조제1항제2호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제9조(계좌의 종류) ① 공단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소퇴직금기금제도의 계좌를 설정합니다.

1. 사용자부담금계정: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관리하는 계정

2.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과세이연을 위한 퇴직일시금을 포함합니다)을 관리하는 계정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 당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적립된 가입자부담금은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제2호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은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가입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또는 퇴직금

⑤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부담금의 연간납입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부담금의 납입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⑥ 가입자가 제4항제2호의 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단에 납입의사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부담금계정에서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4장 부담금의 부담수준과 납입

제1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① 사용자는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담수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가 부담금 부담수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사용자와 가입자의 합의에 따라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날(이하 “소급결정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부담금(이하 “일시전환부담금”이라 합니다)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의 2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소급결정일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times\frac{\text{과거근로기간(일수)}}{365\text{ 또는 }366}$

2. 소급결정일 이전의 평균임금$\times$30일$\times\frac{\text{과거근로기간(일수)}}{365\text{ 또는 }366}$

④ 사용자가 납입할 가입자별 부담금은 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산정합니다.

제11조(부담금의 납입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입 기일(이하 “정기납입일”이라 합니다)은 매년 말일이며, 사용자는 정기납입일까지 사용자부담금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정기납입일 전에 월,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정하여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으며, 가입자별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제10조제3항의 일시전환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소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자부담금계정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거근로기간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단위의 소급결정일마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산정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정기납입일 이전에 제18조에 따른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부담금을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가입자(이하 “당사자”라 합니다)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가입자별 부담금 명세를 공단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수수료를 납입일 전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라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문자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부담금의 미납 시 처리) ① 사용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정기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납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입기일을 연장(이하 “연장납입일”이라 합니다)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지연이자를 사용자부담금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제1항에 따른 연장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일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수수료 등의 산정과 납입

제13조(수수료 및 보수)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 및 부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사용자수수료: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운용 등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2. 가입자수수료: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운용 등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② 기금의 적립금 운용 등에 소요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의 비용은 적립금에서 지급합니다.

제14조(수수료의 산정) 수수료는 제9조제1항의 각 계정별 적립금의 일 단위 평균잔액에 다음 각 호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 사용자수수료율: 연 0.2% 이하

2. 가입자수수료율: 연 0.2% 이하

제15조(수수료의 납입) ①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사용자수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가입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4항에 따라 그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부담금이 처음 납입된 날부터 매 1년 단위로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계정을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신청일에 해지 또는 중도인출하는 날까지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제16조(수수료의 할인) 공단은 수수료에 대해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로 부담금을 납입한 달의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정의 유지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1. 36개월~59개월: 10%

2. 60개월~95개월: 15%

3. 96개월 이후: 20%

제6장 급여

제17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2.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

②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제18조(급여의 신청) ① 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발생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합니다)는 사용자를 통하여 공단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공단에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사용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확인서 등(이하 “IRP확인서”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하는 IRP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급여의 지급방법)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법 제23조의12제2항에 따라 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영 제9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22. 9. 1.>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공단은 급여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포함하여 7영업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봅니다.

③ 공단은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합니다.

제20조(연금 지급) ① 가입자부담금계정에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공단이 정한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하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개시시점(연금지급기준일)

4.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단 및 주거래은행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가입자는 잔존 연금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연금지급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사용자부담금계정 적립금의 반환)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사용자가 제6조에 따른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반환할 적립금은 운용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급여 지급 또는 적립금 이전·반환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이전 또는 반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단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급권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급여 등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제23조(수급권의 보호 및 담보제공) ①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합니다)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영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2항에 따라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

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4조(적립금의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영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중도인출에 따른 적립금의 지급기한 등은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8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

제2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합니다)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제2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합니다.

③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합니다)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제26조(기금의 운용방법) 공단은 영 제1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7.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8.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1.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사업에 대한 투융자

12.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3.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제27조(업무의 일부 위탁)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2. 법 제2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

② 공단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상계좌를 통해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계좌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8조(운용 결과의 귀속) ① 제25조에 따른 기금 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기금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보수의 종류와 보수율은 제30조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9장 가입자 교육 및 운용현황 등의 기록·통지·보관

제29조(가입자의 교육) ①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아.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2.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가. 영 제16조의12에 따른 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한도

나. 영 제16조의14에 따른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교육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③ 사용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등 교육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0조(공시)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1. 영 제16조의20제1항제1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중소퇴직기금제도 취급실적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4. 그 밖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공시 기한은 영 제16조의20제2항에 따릅니다.

제31조(운용현황의 기록·통지·보관) ① 공단은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현황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사용자부담금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장납입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제10장 중소퇴직기금제도의 해지

제32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약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대표 동의서

2. 중소퇴직기금제도 해지 명단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 2년 이내에 한 번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자의 행방불명, 장기 휴업 등의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4.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공단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은 해지하는 날의 1개월 이전에 해지(예정)일, 해지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기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용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을 중소퇴직기금제도의 폐지일로 보아 제33조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⑤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는 언제든지 가입자부담금계정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제도의 폐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중소퇴직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소멸·폐업 또는 도산

2.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폐지일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③ 제3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에 중소퇴직기금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④ 중소퇴직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사용자는 중소퇴직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및 사용자수수료를 공단에 납입한 후 계약의 해지 및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34조(제도의 이전) ① 사용자는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의 해지 후 계약해지 대상자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이하 “제도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사용자로부터 제도이전 신청을 받은 경우 제도 이전을 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③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이전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1장 기타

제35조(계약의 변경)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받거나 변경신고한 표준계약서를 제30조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제31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계약 해지절차를 같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와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권한의 위임) ① 사용자는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사용자의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퇴직급여담당자”라 하며, 사용자는 퇴직급여담당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퇴직급여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7조(신청 또는 통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이 계약에 따라 공단에 신청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fund)의 전자민원을 이

용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개인정보 등의 취급 및 제공) ① 이 계약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합니다)를 공단이 처리함에 있어 이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단은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 또는 제도이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정보나 이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은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9조(자료의 활용) 공단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 및 영 제16조의6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공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의 계약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1조(면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육안 등)한 후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신청, 통지 또는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또는 지연

3.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42조(국가의 지원)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법령 등의 준용 및 해석)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공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공단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 공단 규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44조(계약서의 열람) 사용자는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5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제5조에 따른 계약일부터 제32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적립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반환되는 날에 종료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부담금계정은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부 칙〕

이 계약서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22. 9. 1.>

이 계약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사업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상시근로자수	(임원제외 전체 근로자수) 명	가입자수	명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소재지와 다를 경우 작성)		
사용자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퇴직급여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형태	☐ 신규 ☐ 제도이전(퇴직연금사업자:)		
제도적용일	년 월 일		
부담금 부담수준(선택)	☐ 연간임금총액의 1/12 ☐ 연간임금총액의 ( )/( ) ☐ 연간임금총액의 (**소수 넷째자리까지** %)		
납입주기	☐ 월 ☐ 분기(3·6·9·12월) ☐ 반기(6·12월) ☐ 연납(12월) (선납: 연간 납입할 부담금을 월, 분기, 반기, 연납으로 나누어 해당 주기의 마지막 달에 미리 납입하는 방식)		
납입방법	☐ 자동이체 ☐ 계좌이체	**납입일**	☐ 1일 ☐ 10일 ☐ 25일
다른 퇴직급여제도 설정여부	※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동시에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아래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음(신규도입) ☐ 확정급여형제도(DB) (☐ 이전 ☐ 유지) ☐ 확정기여형제도(DC) (☐ 이전 ☐ 유지) ☐ 퇴직금제도 (☐ 이전 ☐ 유지)		

3 사용자부담금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

사용자부담금 지원금 신청	지원신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사용자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개시일	☐ 가입신청일(신청서 접수일) ☐ 기타신청일(년 월 일)			
부담금에 대한 지원금 수령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반드시 사업주 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 계좌로 기재해 주십시오.				

동 신청 내용은 표준계약서를 따르며, 위와 같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법인은 **법인도장 날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자동이체 거래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사용자부담금을 납입하는 자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과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자동이체 신청) 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부담금 납입예정일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이체 출금계좌 지정 시 납입하는 자의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3조(출금시기) 자동이체를 신청한 부담금은 자동이체 신청 시 지정한 납입예정일에 출금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

제4조(출금) ① 공단은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공단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출금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되지 않습니다.

③ 자동이체 금액은 그 납입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출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됩니다.

제5조(출금우선순위) 납기일에 공단에 이체되는 부담금 외에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과실 책임) ①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한도를 포함한다)이 공단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입하는 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신청인이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입예정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납입하는 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7조(자동이체의 해지) ① 신청인이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자동이체 출금일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까지 해지신청서를 반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납입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8조(정보의 제공) 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융결제원,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와 관련된 계좌정보〈거래은행(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제9조(약관의 변경)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제11조(변경사항의 적용) 자동이체와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자동이체 출금일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까지 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 자동이체 신청사항

금융회사명		예금주		계좌번호	

자동이체 거래약관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 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법인은 **법인도장 날인**

※ 예금주는 자동이체 신청 계좌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주명으로 기재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및 퇴직급여담당자의 기본정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상시근로자수"에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해당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월부터 기금제도 가입신청일이 속한 직전 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해당기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를 작성하며, 사업을 개시한 월에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합산 합니다.

② 퇴직급여담당자란 퇴직연금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자로 공단에서 부담금 미납 등 각종 통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2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른 퇴직급여제도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타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이전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② 제도적용일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한 날로 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한 날이며, 부담금 산정 시작일(기산일)이 됩니다.

③ 다른 퇴직급여제도 설정여부는 해당 사업장에 중소퇴직기금제도 외에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체크하고, 퇴직금제도의 경우 신규에 체크합니다.

④ 부담금 부담수준은 ㉠연간 임금총액×1/12: 법정 적립비율 ㉡기타: 별도 원하는 비율을 직접 기재합니다.

⑤ 계약상 정기납입일은 매년 말일이며, 정기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납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연장납입일)까지 납입기일을 연장합니다. 이때 연장납입일은 지연이자 산정 예외를 위한 기간으로 이 기간에 납입한 부담금은 사용자부담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납입주기는 ㉠월납은 매월 ㉡분기납, 반기납, 연납은 정해진 달 납입일을 의미합니다.

3 「**사용자부담금 지원금 신청**」은 직전연도 보수총액으로 산정된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 개시일 선택항목 중 "가입신청일(가입신청서 접수일)"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년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연도의 지원대상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간에 따라 지원금의 연간한도가 일할 계산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자동이체 신청사항**」

- 납입방법 및 납입일을 기재 시,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사업은 [자동이체 신청사항] 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① 근로자 대표 동의서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명단

③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첨 제1호]

근로자대표 동의서

■ 사업(장) 기본확인 사항(공통)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제도관련 사항(공통)

제도적용일	**년 월 일** ※ 사업장에 기금제도가 적용되는 날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하며, 해당일부터 가입자가 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며(과거소급기간 별도) 정기부담금 산정의 시작일이 됩니다.
부담금 부담수준	☐ 연간임금총액의 1/12 ☐ 연간임금총액의 ( )/( ) ☐ 연간임금총액의 (**소수 넷째자리까지** %)

귀 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약에 동의하며, 제도도입 신청에 관한 절차를 사용자에 위임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20 . . . (서명 또는 인)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전체근로자수 ( ) 명 중 ( ) 명 동의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별첨 제2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E-mail	입사일	중간정산일 (해당자만가입)	가입일	연간예상 임금총액	임원(외국인) 여부	임원 부담금 부담수준
									□ 임원 □ 외국인 (체류코드)	□ 분수 / □ 비율 0.0000
									□ 임원 □ 외국인 (체류코드)	□ 분수 / □ 비율 0.0000
									□ 임원 □ 외국인 (체류코드)	□ 분수 / □ 비율 0.0000
									□ 임원 □ 외국인 (체류코드)	□ 분수 / □ 비율 0.0000
									□ 임원 □ 외국인 (체류코드)	□ 분수 / □ 비율 0.0000
									□ 임원 □ 외국인 (체류코드)	□ 분수 / □ 비율 0.0000
									□ 임원 □ 외국인 (체류코드)	□ 분수 / □ 비율 0.0000
									□ 임원 □ 외국인 (체류코드)	□ 분수 / □ 비율 0.0000
									□ 임원 □ 외국인 (체류코드)	□ 분수 / □ 비율 0.0000

※ 동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fund)에서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별첨 제3호]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

※ 1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는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내용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조회·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거래관계의 설정·유지
조회·수집·이용 항목	- 등록신청에 따른 가입자 정보 · 성명,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내역 정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부담금 부담비율, 연간임금총액 등 가입내역, 상담정보
보유·이용 기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거래 종료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이용 목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거래관계의 설정.유지
이용 항목	-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수집·보유 중인 정보** . 성명,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 중인 정보** . 전국은행연합회(수급권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 행정안전부(성명, 주소) . 4대보험 연계센터(성명, 주소, 연락처)
이용 기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거래 종료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자	**- 주거래은행, 사무수탁사, 제도 또는 급여이전 대상기관, 운영관리업무 위탁받은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거래의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위탁업무의 수행**
제공할 항목	-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관리(거래) 내역
제공받은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목적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가 입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